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13
----------	-------

발의연월일 : 2026. 4. 9.

발 의 자 : 김성원 · 김상훈 · 고동진
정동만 · 박성훈 · 최보운
안철수 · 구자근 · 안상훈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 개시가 가능함.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주로 은행) 사이의 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 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함. 이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가능 여부가 규제당국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특히,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지 및 고객확인의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림자 규제로 정착되었고, 그 결과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의 혁신 유인 저하,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의 은행에의 종속,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위

협의 단일은행 집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명문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가상자산기본법안의 마련에 따라 신고 관련 사항은 모두 가상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되, 자금세탁방지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실명확인 관련 사항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남겨두고자 함(안 제3조, 제7조, 제17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신고”를 “실명확인”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신고)”를 “(실명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등이 같은 항에 따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행하여진 신고 말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3조(시행령의 정비)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의 개정은 이 법 시행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p> <p>1. ~ 3. (생략)</p> <p>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u>신고</u>에 관한 업무</p> <p>5. ~ 7.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실명확인</u>-----</p> <p>5. ~ 7.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신고) ① <u>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p> <p>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② <u>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u></p>	<p>제7조(실명확인) ① <u>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u>가상자산사업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금융회사등으로부터</u></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등이 같은 항에 따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

<삭 제>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

<삭 제>

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삭 제>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삭 제>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와

<삭 제>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등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삭 제>

제17조(벌칙) <삭 제>

<삭 제>

① (현행 제3항과 같음)